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궁역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3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남궁역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경훈,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창진,
민병주, 박중화,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영실, 이용균, 이종환,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4명)

1. 제안이유

- 서울로 7017의 식물 성장에 따른 화분 균열, 식재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식물 및 화분에 관리, 화분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로 7017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로 7017의 관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나. 서울로 7017의 식물 및 화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 2)
- 다. 서울로 7017의 행위에 제한에 화분 훼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6호)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u>〈신 설〉</u>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 ----- ----- -----.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②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정원도시국)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년도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

조항	사업명	예산액(천원)
제5조의2	서울시 7017 운영관리	1,631,479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25.1. ~ 2025.12.
- 추진사무 : 서울로 7017 관리업무 전반 및 서울로 보안관 관리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